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2026

제 2 호

디지털성범죄 판례와 피해지원 강화

- #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과 젠더 폭력
- #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과 개선 방안
- # 법률지원으로 본 피해자의 일상회복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

Contents



이슈 분석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과 젠더 폭력

04

조혜민(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전문가 제언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과 개선 방안

09

이은심 변호사(법무법인 혜석) | 김정혜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장 사례

법률지원으로 본 피해자의 일상회복

16

류혜진 팀장(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부 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

22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2호를 펴내며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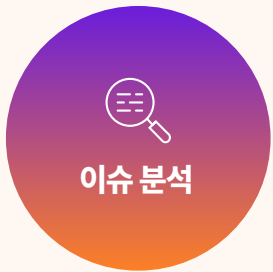
정책전문지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 4회 발행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판례에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사이트」 2호는 디지털성범죄 판례를 함께 들여다보며,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디지털성범죄의 현실, 양형 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원 현장이 한 사람의 일상을 되찾아 온 기록까지 - 서로 다른 시선이 모여 문제의 전체 모습을 비춰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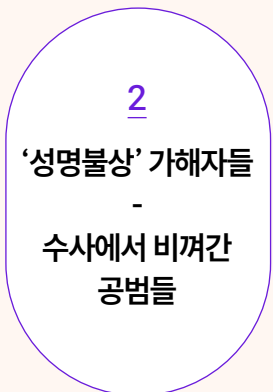
「인사이트」 2호가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모든 주체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슈 분석



1
들어가며



2
‘성명불상’ 가해자들
-
수사에서 비껴간
공범들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과 젠더 폭력¹



조혜민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의미는 훨씬 넓어졌다. 인공지능 기술 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성적 합성물까지 포함해,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 등을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 전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개별 사건 보도나 일부 판결문 검토에 머물러 놓친 부분이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임이 분명한데도, 법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사건들은 기존 분석에서 포괄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검색어(딥페이크, 합성사진, 합성영상, 허위사진, 허위영상)를 통해 검색된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기간은 ‘허위영상물 등 반포죄’가 시행된 시점부터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시행되기 전까지인 2020년 6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로 잡았다.

판결문에서 신원이 특정된 가해자는 모두 159명이다. 이 가운데 단 한 명이 처벌된 사건이 147건, 두 명 이상이 함께 처벌된 사건은 5건이었다. 여럿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한 사람이 SNS로 합성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식이다.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과, 그 채널을 구독하며 합성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함께 처벌된 사건도 있었다.

1) 이 글은 “조혜민(2025), 「[기획논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여성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이름이 특정된 159명 말고도 수많은 '성명불상' 가해자가 등장한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하면, 신원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를 합성해 돌려보내거나 특정 계정에 올리는 식이다. 즉 온라인에서는 분명히 협력 관계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수사 단계에서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판결문에 기록된 159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가해 규모를 다 보여주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으나 범행 당시 가해자가 소년이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소년 가해자는 24명(15.09%)이었다. 이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 중 10대가 61.80%라는 경찰청의 보고²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10대 다수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기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남지 않기에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에서는 청소년 가해자의 실제 규모나 범행 양상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규모는 가해자보다 더 숫자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합성물이 수백, 수천 개씩 만들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한 명 한 명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명시되거나 '성명불상' 피해자로만 남는 등 사실상 피해자 없는 범죄처럼 처리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특정된 판결문만 따로 살펴보면, 10대가 28명(42.4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31.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양상은 더욱 분명했다. 전체 판결문 152건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단 2건이었고, 나머지 150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는 경찰청이 밝힌 통계, 즉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387명 가운데 약 98%(378명)가 남성이었다는 조사 결과³와 맞닿아 볼 수 있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가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몸과 이미지를 성적 대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는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경우, 지인(친밀한 관계·동창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가 40.25%(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전 애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는 6.92%(11명)이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25.78%(41명)에 달했는데, 그중 5.66%(9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해 범행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상대방을 다루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한다. 이 점이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젠더기반폭력의 특징으로서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경향신문, "딥페이크 성범죄 '10명 중 9명'이 10·20대...경찰, 내년에도 집중 단속", 2025.11.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1044001#ENT>)

3) 여성신문,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경찰, 성별구분 통계 첫 공개", 2024.10.0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80>)

1)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인터넷 등에 공개된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에 이미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가운데 수집 경로가 확인된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그중에는 SNS의 ‘친구 추천’ 기능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을 수집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경우도 있었다. 호텔 객실에 로그인되어 있던 개인 계정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례, 학교 근로장학생 신분을 이용해 학교 전산망에 접속해 재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빼낸 사례도 있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준 경우는 3명(1.89%)에 그쳤다.

2) 합성물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가해자의 56.60%(90명)는 합성물을 직접 만들었는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나 텔레그램에서 “합성 대신 해준다”라는 홍보 글을 보고 제작을 맡긴 가해자는 22.64%(36명)이다. 이는 합성물 제작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거나 쉽게 제작을 맡길 수 있는 일이 되었고, 기술적인 규제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들어진 합성물의 내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성적으로 조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문구와 피해자의 이름·생년월일·거주지·학교·직장·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조작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조롱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 혐오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연예인을 ‘OO녀’라는 키워드로 소비하던 문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이 함께 유포되던 방식과 같은 흐름 위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놓여 있는 것이다.

3) 누구에게, 어떻게 유포했는가

합성물은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홈페이지·SNS 계정에 게시되기도 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직접 보내며 유포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피해 대상에 따라 유포 방식도 달랐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해 공유됐다. 하지만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직접 보내거나,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올렸다. 또한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상대방의 헤어지자는 말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용도로 쓰였고, 좋아하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의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합성물을 이용한 사건도 있었다.

5

텔레그램 조직, 그러나 적용되지 않은 범죄단체조직죄

직장 동료로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회사 공용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합성물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성물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협박, 신상 공개, 그루밍, 스토킹으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범죄와 함께 나타났다.

가해자 중 29명(18.24%)은 텔레그램 그룹방의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였다. 이 가운데 15명은 연예인, 9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운영 방식은 체계적이었다. 합성물을 공유하는 방, 다른 그룹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모아둔 방, 합성 대상별로 나눈 방, 합성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방, 운영 방식을 상의하는 방까지 따로 만들어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한 그룹방이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붙잡혀도 다른 그룹방, 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가해자를 통해 네트워크 자체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들 29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판결문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사태 이후 대규모로 진행된 수사·기소 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분석 시점 이후에 선고됐거나 법원 검색 시스템에 잡히지 않을 수 있기에 앞으로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은 온라인 조직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일 자체는 이미 선례로 있기 때문이다. 같은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였던 ‘박사방’ 사건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임에도 박사방에는 적용된 죄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그룹방 운영자들에게는 왜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운영 방식과 범행의 질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존 법 적용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한 사회와 사법 체계가 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먼저 어떤 법이 적용됐는지를 보면, 전체 가해자 159명 중 141명(88.68%)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44.65%, 71명), 정보통신망법(35.22%, 56명), 아동복지법(4.40%, 7명), 스토킹처벌법(3.14%, 5명) 순이었다.

다시 말해,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해서 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의도를 어떻게 보는지, 합성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있었다. 형량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실형은 68명(42.77%), 집행유예는 75명(47.17%)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75명 가운데 69명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6

법원의 판단 — 절반에 가까운 집행유예

이는 범행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적용된 기준이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여성 연예인의 영상물을 71개나 제작·유포한 가해자,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영상물 2,022개를 만들어 2,071개를 판매한 가해자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둘 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양형에서 자주 언급된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합성 수준이 조잡하고 유포 범위가 좁다는 점’이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보다 합성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판결문 분석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새로운 기술이 우연히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려 해온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디지털 환경을 만나 나타난 디지털 젠더폭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성 차별을 둘러싼 구조와 인식을 바꿔나가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한편, 판결문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이름이 밝혀진 가해자와 피해자 너머에 ‘성명불상’으로만 남은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범죄의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결문에 ‘불상’으로만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7

남은 과제:
‘성명불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더 물어야 할
질문들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과 개선 방안



이은심 변호사 법무법인 혜석
김정혜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8.4%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² 아래에서는 판결문의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의 감경 사유를 살펴보면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³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2차례 수정되었다. 다음 표는 성적 촬영, 촬영물 유포·소비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으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 중 일부에 대해 정의와 판단 기준을 두어 각 법원의 일관된 양형 판단을 도모하고 있다.

<표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감경요소

구분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1) 본 원고는 다음의 원고 내용을 일부 요약하거나 수정한 것임, ‘이은심·김정혜(2025)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성적 촬영 및 유포 등 범죄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025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양형위원회(2024), 2023 연간보고서, 151-152쪽.
3) 본 원고의 분석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사건으로서 2022.6.1.~2023.5.31. 기간에 선고된 형사 1심 판결문임.

구분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출처: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위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요소 외에도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다양한 사정들도 감형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판결문에서는 위 양형인자 외에도 성범죄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거나 범행 후 치료, 상담, 교육을 받았다는 등 여러 사유들이 성범죄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된다.

가. ‘처벌불원’

1) 성범죄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처벌불원임에도 감형됨

디지털성범죄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벌불원’을 이유로 감경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그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것을 요한다.⁴

그러나 성범죄자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나 그 가족들이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구하여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였다.

성범죄자 또는 그 가족 등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구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 회복과 용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신원 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이나 디지털 성범죄의 사소화와 합의 종용으로 인한 부담에서 비롯된 것인 때에도 감형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2) 피해자 중 일부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감형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이나 유포 범죄에서 피해자는 수십,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한다. 이때 성범죄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일부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

4)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형에 반영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 사례에서는 남녀 피해자들 중 남성 1명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였고 그 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는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였는데, 재판부는 엄벌 탄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남성 피해자 1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나마 이 사례에서는 엄벌 탄원 의사가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이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성범죄자조차 피해자들을 모두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최소한의 피해자만 특정하여 기소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성범죄자가 기소된 사건 피해자 중 1명 또는 소수와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성범죄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형 판단에서는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만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내더라도 감형 사유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임에도 감형됨

형사공탁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회복’에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공탁 사실 자체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일부 판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사과하면서 나름 합의를 위해 노력함’,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 등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인 경우에도 공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형 이유로 참작되었다. 이는 금전 공탁이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의 용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과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탁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성범죄자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지만 전과가 없으므로 감형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어 그 적용을 제한하였다.⁵ 이와 같은 제한의 취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여도 암수범죄가 많고, 다수 범행에 대해 일괄 처벌되는 경우까지도 감경인자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⁶

5)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6) 양형위원회(2020), 81-82쪽.

그러나 노트북 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숨긴 상태에서 약 2개월간 총 100회에 걸친 촬영을 한 사례, 약 5개월 간 무음 촬영 앱을 사용하여 15세 여성을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 3개월 간의 매일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1회의 촬영을 한 사례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 촬영 사례의 다수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아가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감형됨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가 포함되는데, 위 양형인자는 촬영물의 삭제를 이유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초기화하는 등 사실상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촬영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감경사유로 하면서도, 동시에 성범죄자가 수사에 혼란을 주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 사건 외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을 ‘범행 후 증거은폐’로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비록 불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촬영물 삭제가 이 사건의 촬영물과는 다른 것이지만, 피고인의 수사 미협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으로 인해 이 사건 촬영물의 삭제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감경에 반영하게 되는 모순된 양형의 현실을 보여준다.

마.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카메라 조작 미숙, 실수 등으로 우연히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감형됨

양형위원회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나,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어서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⁷

그러나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 고려하면, 성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너무 밝거나 어둡게 촬영되거나 영상이 끊기는 등 단순 실수나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촬영물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⁸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나 탈의실 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을 하거나, 모텔에서 성관

7) 양형위원회(2020),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84쪽.

8) 송영지(2021),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62, 418쪽.

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의도대로 촬영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이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되는 모순적인 사례가 존재하였다.

바. ‘진지한 반성’: 범행의 인정

성범죄자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적용한 판결문이 상당수 있었는데, 실제 판결문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성범죄자의 반성이 어떤 면에서 재범 방지를 기대하게 하는지, 피해 회복에는 어떻게 기여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⁹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데, 성범죄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범죄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례들이 존재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자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사. 명시된 양형인자 외의 정황

1) 촬영과 유포를 따로 판단해야 함에도 ‘유포되지 않음’을 이유로 감형함

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과 유포 행위를 한꺼번에 규정하던 때에는¹⁰ 의사에 반한 촬영만을 판단하고 유포하지 않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판결이 적지 않았다.¹¹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죄에서 유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경할 근거는 없다. 양형기준에서도 ‘유포되지 않음’은 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21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성범죄자에게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다수 나타났다. 그 결과, 유포죄를 저지르는 일 없이 촬영죄만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기본이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²

9) 백소윤(2020),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양형 판단의 문제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토론회, 20-22쪽;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91쪽.

10) 구법에서는 제14조 제1항에서 반의사촬영 및 반의사촬영물의 유포를, 제2항에서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의 반의사유포를 구분하여 제2항의 유포를 더 가볍게 처벌하다가, 2018년 12월 개정에서 제1항은 촬영죄, 제2항은 유포죄로 구분하였다.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백광균(2019),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53쪽.

12) 백광균(2019), 54쪽.

2)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한 신체’라는 이유로 감형함

반의사촬영죄의 여러 판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외부로 노출한 부위를 촬영하였거나 신체 부위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경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대중 교통, 도로 등 공개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사례에서 법원은 ‘외부로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 했거나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성적 권리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낮다’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한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권리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스스로 노출한 신체의 촬영이므로 권리 침해 정도가 가볍다는 판단은, 성적 자유 침해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한다.

3) ‘피해자의 촬영 동의’를 이유로 감형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보내주었다거나 과거에 성적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과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아 감형한 판례들이 나타났다. 사귀는 도중 피해자가 직접 전송한 영상을 헤어진 이후 게시한 사례, 개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동영상 녹화프로그램으로 복제하여 게시한 사례 등에서 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거나 피해자가 후원금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성인방송을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반의사유포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양형기준에도 피해자의 직접 촬영을 감경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BJ의 방송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행동, 피해자의 직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의 반영으로 보인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촬영에 대하여 감경 사유로 고려되기도 한다.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거나 합의하에 서로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는 것이다. 반의사촬영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피해자가 성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판단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가해자의 책임이 덜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¹³

13) 임하연·박지선(2023),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312-313쪽.

4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디지털 성범죄 판례에 나타난 감경 사유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경우에만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경우우에 처벌불원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⁴ 둘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피해 회복’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공탁 금액만으로 ‘피해 회복’을 측정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이 양형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을 감경에 참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피해 회복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확인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감경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셋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진정한 의미의 초범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불특정다수 대상 범행, 반복적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감경을 축소하며, 증거 인멸 행위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도록 양형인자의 정의를 세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미한 피해를 의미하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감경인자에서 삭제해야 한다. 촬영죄의 피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 행위의 대상이 되는 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신체가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 여섯째, 피해 촬영물의 미유포 또는 제한적 유포를 사유로 감경하는 관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촬영물의 유포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에도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곱째, ‘진정한 반성’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적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정한 반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¹⁵

14) 김영미(2019), 129쪽; 백소윤(2020), 26쪽; 김지선 외(2023), 332쪽.

15) 백소윤(2020), 22쪽.



법률지원으로 본 피해자의 일상회복



류혜진 팀장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소라넷 폐지운동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들의 역사적 움직임을 통해 2017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2018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정책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시작되었다. 2019년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4개 지역에 삭제지원을 포함한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 설립되었다. 2024년 8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매체와 성착취적 문화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정책 현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실질성이 보다 확대되길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의 빠른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법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들은 법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 사건의 법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혹은 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임에도 디지털 매체 특성에 의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어려워 법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상담, 피해촬영물의 존재·유포불안·유포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과 형사사법절차 내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포함한 피해 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사건지원), 피해자의 정서안정·심리치료를 위한 피해회복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은 디지털 매체와 성착취적 성문화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적 사건으로 위치시키면서 구조적 피해자인 여성이 이를 인식하고 사회적 지원과 함께 피해 사건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행해진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의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은 디지털 매

2

법률지원의 의미 :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개념 확장을 위한 법 안팎의 지원

체 특성을 고려하여 법 안팎을 아우르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인천센터)의 5년 간의 피해자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법률지원의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조항은 디지털 매체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피해 상황에 따라 이를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왔다. ‘타인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불법촬영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2018), 피해촬영물 ‘구입·소지·시청·저장’ 처벌조항,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 및 피해촬영물 ‘유포 협박죄’가 신설되었으며(2020),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범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2021), 온라인스토킹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2023), 허위합성물 제작에 있어 반포목적이 삭제되고 협박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다(2024). 이와 같은 법 개정은 현행법에서 성폭력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해 현장을 가장 먼저 접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의 법률지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사법기관의 역할이 현행 법문 해석에 따른 범죄사건 규명 및 가해자 처벌이라면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은 디지털 성범죄 상황에 처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사건 규명 및 피해자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현행법에서 담아낼 수 없는 피해자의 피해 사건에 대한 서사(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 언어로 해석하고 담아내는 것이 피해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의 역할이자 피해지원 기관만의 고유한 법적 지원 영역인 것이다.

인천센터에서는 이러한 법률지원의 목적성을 이뤄내기 위해 본인의 피해 사건을 문제화하고 이에 맞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당사자, 피해자의 지지자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건을 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법적 문제화하고 지원하는 피해지원자,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상담을 진행,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변호사가 상호 연대를 통해 한 팀이 되어 피해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처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센터 지원자에게 피해 사건을 말하는(speak out) 용기를 내고, 이를 귀 기울여 들은 센터 지원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건을 논의한다. 이때 “피해자의 입장”은 피해자의 상황에 편향된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기반 폭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에 사회구조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에 위치하게 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사건을 논의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피해 사건을 어떻게 법적 절차 내에서 사건화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피해자-센터 지원자-변호사가 함께 진행한다.

때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현행 법에서 성범죄로 다뤄지지 않아 법률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바로 수사기관으로 피해사건을 접수하러 갈 경우 법적 피해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려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부인되는 것에 의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각

지대 피해를 상담하면 바로 수사기관으로 안내하지 않고 센터로 와서 상세하게 함께 논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한다. 담당자는 지원사례, 판례, 가능한 법조항을 찾아보고, 법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한 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피해자와 함께 최대한 모색한다. 이러한 법 외부에 위치되는 피해들이 형사사법절차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때로는 법률 제·개정까지 이어지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인천센터는 소위 “법적으로 안 되는 사건”들을 자문변호사들과 함께 끝까지 관철해서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거나 판례가 새롭게 형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의 설립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왔듯이, 피해지원 기관의 법적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목소리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법적 언어화하는 것이다. 이하 관련한 주요 법률 지원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1> 법률지원 사례(1): 유포협박죄 범위 확대

구분	내용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례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 답장을 하지 않자 사귀는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적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도록 유도한 사례. 피해자는 성적 영상물을 받은 후, 가해자가 여전히 영상을 소지하고 있고 유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해자의 연락을 받게 됨.
지원내용	1심에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포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불안에 시달림. 센터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진료와 상담을 지원함. 더불어, 영상을 받았을 당시 피해자가 느낀 심정을 재판부에 알려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피해 촬영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포협박죄를 인정함.

위 지원 사례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영상물의 전송 자체로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가해자는 촬영물을 전송하였을 뿐, 협박과 관련한 일체의 문언은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유포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2심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 거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 지원자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불안감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재판부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유포협박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표2> 법률지원 사례(2): 허위영상물 관련 사각지대 피해사례 대응

구분	내용
편집, 합성, 가공 등 허위영상물 사례	피해자 영상, 사진을 보면서 자위하는 장면 촬영, 일상 사진 혹은 개인정보와 타인 성관계 촬영물을 편집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편집, 합성, 가공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사례 증가,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영상 자체의 편집이나 가공이 아닌 경우 제14조의2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지원내용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당 피해 촬영물들이 제14조의 2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피해 상황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판단함. 따라서 삭제지원, 서류작성 지원 시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방지법 등을 명시하여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진행

위 지원 사례는 현재 허위영상물 관련 사각지대 피해 사례로, 피해자 본인 사진과 다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나란히 편집하여 유포하는 형태의 화면 편집,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가 하지 않은 허위 발화, 피해자 연락처 등의 텍스트를 편집하여 유포하는 형태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되지 않는 허위 영상물 사각지대 피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사례이다. 수사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허위영상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법조항을 통해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 허위영상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 편집, 가공에 대한 적용범위 확장 등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표3> 법률지원 사례(3): 허위영상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적극 대응

구분	내용
편집, 합성, 가공 등 허위영상물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개정(2024. 10. 16.)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던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 가해자들이 이를 유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되는 상황 발생
지원내용	센터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허위합성물의 존재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지 고민. 형사 고소 시기가 모두 2024. 10. 16. 이후인 것으로 확인,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추가하여 기간 내 자문변호사 통해 항고, 의견서 제출, 항고 인용되어 재판 진행 중

위 지원 사례는 허위영상물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한 허위영상물 제작 피해에 대한 지원 사례로 비록 법 개정 전이어서 제작 자체는 법적 처벌이 불가했지만 소지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수백장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음에도 이를 유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법적 공백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센터의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해 소지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불기소된 건에 대한 항고 인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기에, 센터는 해당 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와 수차례 상의하여 의견서, 센터 지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실질적으로 센터 개소 후 최초 항고 인용 건인데, 현재 비슷한 사례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된 건들이 있어 항고 인용 결과 바탕으로 이의신청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한 명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한 성공적 결과는 다른 피해자의 사건에도 적용되어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회복을 확산하고 있다.

<표4> 수사기관 규정 개정 사례

구분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개정	“주요한 인적·물적 수사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검찰·경찰 사건 이송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신설” -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이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소사실이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빌미가 됨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그 결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 53조(수사 결과의 통지)”에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주요한 인적·물적 수사 전 이송 등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사건이 통지되지 않도록 근거가 마련됨

위 지원 사례는 수사 절차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던 사안으로, 향후 다른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절차 미비의 문제이기에 사회적 공론화가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 판단, 센터는 자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건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보도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

<표5> 법률지원 사례(4): 온라인그루밍 대응 통해 피고 형량 가중

구분	내용
불법촬영 및 성착취 사례	• 센터는 삭제지원을 통해 피해 촬영물 내용 인지, 영상에는 미성년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 있었음.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었음.
지원내용	• 센터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재판 모니터링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 촬영물의 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음. 센터는 재판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격권 침해 행위가 가해자의 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재판부에서 검토 후, 심각성을 인지하여 1심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1년 가중하여 판결

위 지원 사례는 온라인그루밍, 성착취물 제작 피해 사례로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심까지 센터에서 적극 지원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

피해 사건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처음 진행해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잘 모르고, 또 경찰서에 가면 모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사건의 법적 진행의 전 과정을 심리상담, 삭제지원 등과 함께 “깊고 폭넓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지원기관의 존재는 피해자들에게 전적인 “지지”로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법적지원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상담, 삭제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 속에서 피해자-센터 지원자-변호사가 연대하는 법률 지원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센터 지원자와 만나며 사건 진행과정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때로는 깊게 좌절하기도 하지만 피해에 맞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센터 지원자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깊게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지원이 다른 폭넓은 피해자 지원 진행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연속성, 지속성을 갖게 되며, 이는 피해자와 자주 만나지 않는 변호사의 법적 지원 업무 또한 더욱 안정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건의 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맞서고 이에 대해 센터를 통해 공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비록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부딪혀보고,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센터 지원자,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이를 피해자가 적극적 선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나가고자 했기

3

**피해지원기관의
역할 :
법은 최소한의
지원 범위,
법적 경계에 있는
피해를 지원,
발굴하는 것이
피해지원 기관의
역할**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 행위성이 피해자에게 힘을 기르게 하고 이러한 연대 속에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오프라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이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이렇듯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의 법적 지원은 이러한 매체 특성에 의해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는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위 “사각지대 피해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있어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은 지원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범위를 말해줄 뿐 지원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법적 지원을 통해 법률 제·개정이라는 법·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고유한, 역사적 기관으로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함께하는 피해지원 기관의 실질적, 안정적 운영을 통해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 법률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 지원은 모두 무료입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①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동행,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고소 대리, 소송 대리 등이 포함되며, 불법촬영·유포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이버 성폭력 피해도 지원 대상입니다.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③ 진술조력인

-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에서 진술이 어렵게 느껴질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어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나 증언을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중앙·지역 디성센터는 피해 상담부터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수사·법률·의료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고,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와 상담, 지원 신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이용하세요

1. 상담·신고하기

국번 없이 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d4u.stop.or.kr)으로 연락합니다.

2. 삭제지원 + 법률지원 연계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고, 필요한 법률지원 제도로 안내받습니다.

3. 무료 변호사와 함께 절차 진행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진술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삭제지원 · 수사 · 법률 · 의료 연계지원,
모두 무료입니다.

☎ 전국 대표전화 **1366 (24시간)**

☎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